

의안번호	제 225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269 회)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4월 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4 월 7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및 현실운영 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행정 효율을 제고함은 물론,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 - 근거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 및 제141조 → 제104조 및 제151조
- 혁신담당관
 - 민간위탁대상사무“Happy Call센터 운영사무”신설
 - “Happy Call센터 운영사무”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 제고와 객관적 운영을 기함
 - ※사무내용 : 전화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, 불만요인, 건의사항 등 조사
- 전략산업팀
 -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의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
 -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경쟁력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
- 청소년아동과
 -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삭제
 -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

□ 보건위생과

○ 한센이동진료사업 사무 삭제

- 「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」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

3. 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제151조 외 개별법

4. 조 례 안 : 불 임

5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6. 관련법령 발취 : 불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 및 제141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 104조 및 제151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민 간 위 탁 사 무

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혁신담당관	1	○Happy Call센터 운영사무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지방자치법 제104조
정보통신담당관	2	○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-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-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 -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-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	(재단법인)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	지방자치법 제104조
경제정책팀	3	○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-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-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-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	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사	기능장령법 제11조, 제13조 제15조,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6조
전략산업팀	4	○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	과학기술관련법인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5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- 도 공예품경진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
기업지원팀	6	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	청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7	○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 - 청주지방산업단지 - 현도지방산업단지 - 부용지방산업단지 - 대소산업단지 - 대풍지방산업단지 - 오창과학산업단지 (공단 임대사무 포함)	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95조</u> 및 <u>제141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(시·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.....「<u>지방자치법</u>」 <u>제104조</u> 및 <u>제151조</u>.....</p>

【별표】

민간위탁사무

현행					개정안				
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		(신설)			혁신담당관	1	○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<u>지방자치법 제104조</u>
<u>정보통신담당관실</u>	1	(생략)		<u>지방자치법 제95조</u>	정보통신담당관	2	(현행과 같음)		<u>지방자치법 제104조</u>
경제정책팀	2	(생략)			경제정책팀	3	(현행과 같음)		
전략산업팀	3	(생략)			전략산업팀	4	(현행과 같음)		
	4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· 도 공예품경진대회	충북공예협동조합 청주상공회의소	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40조제60조 및동법시행령제45조		5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- 도 공예품경진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
기업지원팀	5~6	(생략)			기업지원팀	6~7	(현행과 같음)		
보건위생과	7	○ 한센이동진료사업 업무	한국한센복지협회 충청북도지부	전염병예방법 제23조, 제48조			<삭제>		
청소년아동과	8	○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	청소년관련법인	청소년기본법 제61조			<삭제>		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1조 (사무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·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
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4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
5.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,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【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】

제62조(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【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】

제54조(민속공예산업의 지원)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2. 제품의 판로 확보
3. 제품 개발,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

【전염병예방법】

제2조(정의) ② "전염병환자"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.

③ "전염병의사환자"(이하 "의사환자"라 한다)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.

제4조 (의사등의 신고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,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,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【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】

제1조의3 (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)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8.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·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(시·도지부를 포함한다)

※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【2008 한센사업지침】

<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의 주요업무>

-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
-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조사연구
- ③ 한센병이동진료, 외래진료
- ④ 이동진료 관할지역 정착농원, 한센시설에서의 진료
- ⑤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
- ⑥ 시·도 및 보건소의 한센담당자, 정착농원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도
- ⑦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과의 사업 협조
- ⑧ 시·도 보건(위생)과와 업무 협조
- ⑨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사업 등